

계룡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7
----------	-----

발의년월일 : 2005. 5. 30.

발 의 자 : 김정순의원외 2인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2항 규정이 2005. 1. 27일 삭제됨에 따라
- 계룡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율적인 회기 운영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회기)
 -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함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41조

신 · 구조문 대비표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 (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제3조 (회기) <삭 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62호]

제4절 소집과 회기

제38조 (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8.31]

제39조 (임시회) ①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1994.3.16>

②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삭제 <2005.1.27>

③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9.12.30, 1994.3.16, 1999.8.31>